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형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이광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6년 9월 27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9월 28일

3.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나. 일부 조문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주민 의무 부과 내용 삭제(안 제8조제2항)

나. 기타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8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은 ‘협조요청을 받은 사람’ 즉 관계인(일반인)에게 ‘해당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 가.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